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様式第33号]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下記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① 성. 본 창설자 ① 姓. 本貫 創設者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② 성. 본 ② 姓. 本貫	종전의 성(姓) 従前の姓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종전의 본(本) 従前の 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창설한 성(姓) 創設した姓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창설한 본(本) 創設した 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③ 허가일자 ③ 許可年月日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裁判所の 名称					
④ 기타 사항 ④ その他の事項										
⑤ 신고 인 ⑤ 届出 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자격 資格	(1) 본인 (2) 법정대리인 (3) 기타(자격:) (1) 本人 (2) 法定代理人 (3) その他 (資格:)								
	주소 住所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メール アドレス			
⑥ 제출인 ⑥ 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작성방법 作成方法

-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 ※ この届出書は、外国の姓を使う国籍取得者がその姓を使わず新しく姓と本貫を定めようとする場合、管轄家庭裁判所で姓・本貫創設許可決定を受け、その許可決定書謄本を添付して姓・本貫創設許可決定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1ヶ月以内に提出するものです。
-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 欄④: 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創設前の姓と本貫が漢字かハングルでない場合は、本来の文字を表記
- ⑤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개명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欄⑤: 本人が届け出る場合は、創設後(改名後)の氏名を記載します。届出人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欄⑥: 提出者(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に限り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첨부서류 添付書類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 国籍取得者の姓・本貫創設許可決定書謄本 1部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より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